

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,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간을 5년으로 명시 함(안 제4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6.10.5.~10.25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3) 규제심사 : 비규제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(미반영)

개선의견	반영결과
<p>제11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위원회 위원 10명중(당연직 2명 제외) 중 임기 만료된 6명중 남성 3명, 여성 3명으로 구성됨 - 임기가 만료('17.11.07)되지 않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분야의 위원 4명(남성)은 재정비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하겠음

5) 법제심사 : 원안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④ (생 략) ⑤ <u>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 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	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 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 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 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
연락처	(033) 330 - 2150

관계법령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(신·구조문 대비표)

개정 전('04.11.19)	개정 후('16.1.1 시행)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	제3조(삭제)